

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되고 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된다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령 개정
- 3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먼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 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m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 현행 정비사업비 = 기초금액 + 추가금액(200억원×계수(≤1))

개정 정비사업비 = 기초금액 + 추가금액(700억원×계수(≤1))

※ 현행 정비사업 대상 = 총저수용량 2천만^m 이상인 댐

개정 정비사업 대상 = 총저수용량 10만^m 이상 2천만^m 미만 댐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댐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및 개요, 위치, 시행자, 착수 및 준공연월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및 권리의 명세,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예정공정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댐건설관리법)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1-7682)
		담당자	사무관	이정현 (044-201-7685)
(하천법)	환경부 하천계획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701)
		담당자	사무관	이성희 (044-201-7702)



□ 배경

- 댐 건설 시,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현행) >

- ▶ (사업비) 기초금액 : 300억원(총저수용량 2천만^m³~15천만^m³), 400억원(총저수용량 15천만^m³ 이상)
 추가금액 : 200억원 이내 지원(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물 세대, 개발수요 등 고려)
- ▶ (사업대상) 저수면적 200만^m² 이상 댐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m³ 이상 댐
- ▶ (사업내용)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등

사업내용	세부내용
생산기반 조성사업	• 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휴게소, 토산품 판매장 등
복지문화 시설사업	•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 시설사업	• 하천정비,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 추가금액 한도 상향(200→700억원),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른 계수 조정 등

②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 환경부장관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이 10만^m³ 이상인 댐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③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부내용 현행화

-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사업 추가 등

□ **배경**

○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 간소화 필요

※ (입법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제2항도 안전조치 또는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로 정해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생략 허용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재난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하천공사의 범위 확대*

*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생략 가능

□ **개정안 주요 내용**

○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중 하천관리청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경미한 하천공사에 포함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신 설>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③ (생 략)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시행되는 안전조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